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24.2.13.)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어 소관 예규(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등 35개)의 조직명칭을 일괄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직명칭 등 변경

조번호	행정규칙 명	개정 내용
제1조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 조직명칭 등 변경 - 문화재청→국가유산청 -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
제2조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3조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5조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제6조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제7조	국가유산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제8조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제9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0조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제12조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3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14조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제15조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제16조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제17조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18조	문화유산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제19조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제20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21조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22조	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3조	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24조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문화재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6조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7조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28조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규정
제29조	방호원근무규정
제30조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제31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32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제33조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제34조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관리 규정
제35조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예산에 기반영 되었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생략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등 35개 문화재청 예규 일괄개정안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등 35개 문화재청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의 개정)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조(「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의 개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의 개정)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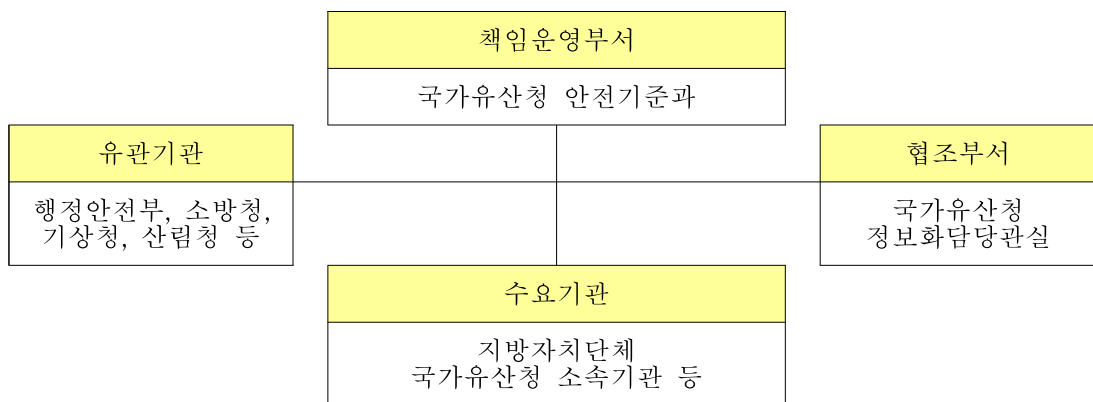
제4조(「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청 소속기관”을 “국가유산청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으로 한다.

제12조 중 “「문화재청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국가유산청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의 개정)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기타의 디자인 기준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호 안내문안 작성 기본원칙의 디자인 기준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기타의 점검내용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의 개정)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의 개정) 국가유산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1.1 2)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2. 중 “문화재청장이”를 “국가유산청장이”로 한다.
3. 3.2 중 “문화재청장은”을 “국가유산청장은”으로 한다.
4. 4.1 1) 나) 및 같은 호 4) 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8. 8.2 중 “문화재청장의”를 “국가유산청장의”로 한다.
13. 2)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 “설계승인“이란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도서(발주청이 검토하는 “내역서“는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지침 및 관계 법령 등 제 규정에 따라 품질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장이 그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과”를 “국가유산청장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에게”를 각각 “국가유산청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중 “문화재청장은”을 “국가유산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의 개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청장의”를 “국가유산청장의”로, “문화재청장에게”를 “국가유산청장에게”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의 개정)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의 개정)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 ※주 타목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목 본문의 후단 중 “문화재청에”를 “국가유산청에”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문화재청이”를 “국가유산청이”로 한다.

별표 9 ※주 가목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목 본문의 후단 중 “문화재청에”를 “국가유산청에”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문화재청이”를 “국가유산청이”로 한다.

제13조(「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정)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4조(「국가유산음부즈만 운영 지침」의 개정) 국가유산음부즈만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의 개정)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6조(「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의 개정)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7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의 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8조(「문화유산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의 개정) 문화유산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9조(「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정)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같은 목 중 “문화재청 예산지원”을 “국가유산청 예산지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및 같은 목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1조(「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공무

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4조”를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4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7조”를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7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4조”를 “「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제14조”로 한다.

제22조(「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개정) 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

제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3조(「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재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을 “국가유산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으로 한다.

제2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별표 4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4조(「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 및”을 “국가유산청장 및”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청장등”을 “국가유산청장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등”을 “국가유산청장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등”을 “국가유산청장등”으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5조(「(문화재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국가유산청

제21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표의 국가유산의 구성 요건란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6조(「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의 개정)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을 “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재청의”를 “국가유산청의”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7조(「문화재청 청림마일리지 운영지침」의 개정) 문화재청 청림마일리지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청 청림마일리지 운영지침”을 “국가유산청 청림마일리지 운영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8조(「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규정」의 개정)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청장의”를 “국가유산청장의”로, “문화재청장 소속”을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되,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되,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고”를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고”로, “문화재청 차장”을 “국가유산청 차장”으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를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 소속”을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9조(「방호원근무규정」의 개정) 방호원근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30조(「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의 개정) 사적의 지

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의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의 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1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

화재청 이외”를 “국가유산청 이외”로, “문화재청과”를 “국가유산청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은”을 “국가유산청장은”으로, “문화재청장에게”를 “국가유산청장에게”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7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3조(「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의 개정)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4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인류무형유
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
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
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문화재청 홈페이
지”를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
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
다.

제35조(「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
영 규정」의 개정)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
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규정의 개정) <u>문화재청장</u> 은 이 예규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규정의 개정) <u>국가유산청장</u> ----- ----- ----- -----.
제7조(재검토기한) <u>문화재청장</u> 은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u>국가유산청장</u> ----- ----- ----- ----- ----- -----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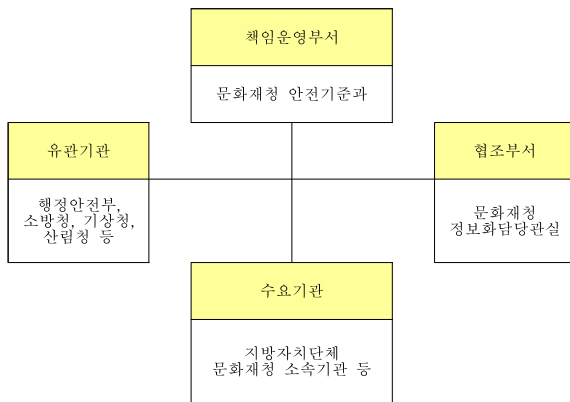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3조(재검토 기한) <u>문화재청장</u> 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u>국가유산청장</u> ----- ----- ----- ----- ----- -----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u>문화재청장</u> 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제9조의2(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 ----- ----- ----- <u>국가유산청장</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시스템의 구축) <u>문화재청장</u> 은 국가유산 방재정보를 지자체의 국가유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스템의 구축) <u>국가유산청장</u> ----- ----- ----- -----.
제5조(국가유산 방재정보의 제공) <u>문화재청장</u> 은 국가유산 방재정보를 온라인 및 메시지(MMS), FAX, 유선전화(VMS) 등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와 <u>문화재청 소속기관</u> 등에 전달할 수 있다.	제5조(국가유산 방재정보의 제공) <u>국가유산청장</u> ----- ----- ----- ----- <u>국</u> <u>가유산청 소속기관</u> ----- -----.
제6조(시스템 운영) ① <u>문화재청장</u> 은 웹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스템을 운영하며, 관리자용과 사용자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6조(시스템 운영) ① <u>국가유산청장</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조직도)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제7조(운영조직도) ----- ----- -----.



제8조(운영조직별 역할) ① 문화재청 안전기준과는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및 교육 등을 총괄 담당한다.

②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은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등을 지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청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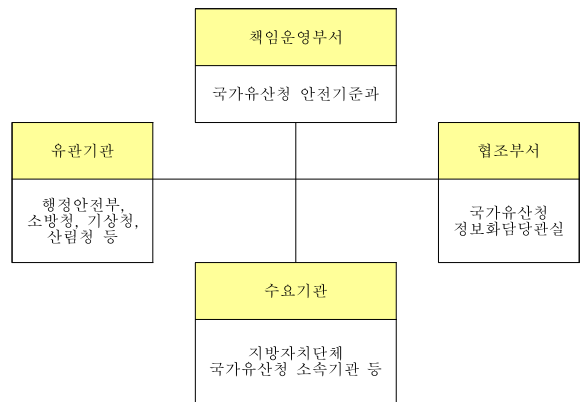
1.·2. (생략)

제10조(서비스의 중단) ①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1조(보안대책) ① 시스템 관리



제8조(운영조직별 역할) ① 국가유산청 -----

-----.

② 국가유산청 -----

-----.

③ ----- 국가유산청청

-----.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서비스의 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안대책) ① -----

자 또는 내부 관련자(직원, 유지 보수자, 시스템 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시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을 따른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2조(개인정보보호)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따른다.

제13조(소유권) 국가유산 방재정보 체계에 활용되거나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수요기관은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DB 등을 재난에 의한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대응활동 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교육) 문화재청장은 교육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의 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개인정보보호) -----

----- 「국가유산청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

제13조(소유권) -----

----- 국가유산청-----

-----.

제15조(교육) 국가유산청장-----

-----.

제16조(행정관리) ① <u>문화재청장</u>은 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u>문화재청장</u>은 시스템의 내용 연수를 감안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예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보안업무 및 정보화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u>문화재청</u>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2. <u>문화재청</u> 정보화업무 처리규정	제16조(행정관리) ① <u>국가유산청장</u>----- ----- ----. ② <u>국가유산청장</u>----- ----- ----- -----. 제17조(준용) ----- ----- ----- -----. 1. <u>국가유산청</u> ----- -- 2. <u>국가유산청</u> ----- --
--	--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유형별 상세 기준 개발·보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리주체(<u>문화재청</u> 은 제외한다)가 국가유산 유형별 상세 기준을 설정하거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u>문화재청장</u> 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문화재청장</u> 의 의견이나 행정지도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유형별 상세 기준 개발·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국가유산청</u> ----- ----- ----- ----- <u>국가유</u> <u>산청장</u> ----- -- <u>국가유산청장</u> ----- -----.
제11조(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① <u>문화재청장</u> 은 이 지침에서 규정한 공공디자인 계획 또는 설계 등을 자문하기 위해 ‘국가유산 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공공디자인 자문위원회) ① <u>국가유산청장</u> ----- ----- ----- ----- -----.
제12조(공공디자인 관리) ①·② (생략) ③ <u>문화재청장</u> 은 공공주체에게 ‘별표 3’의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공공디자인 점검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공공디자인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유산청장</u> ----- ----- ----- ----- -----.

국가유산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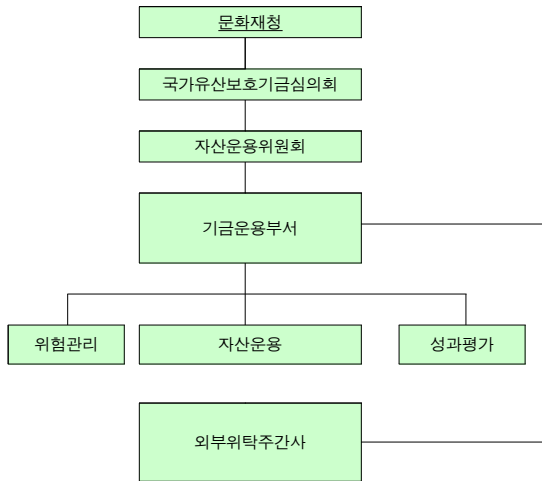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34조(영문 표기 자문위원회) ① 이 규칙에 따른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에 대하여 자문을 하기 위해 <u>문화재청</u> 은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국가자문위원회’를,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국가유산 명칭 영문 표기 시·군·구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u>문화재청장</u>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영문 표기 자문위원회) ① ----- ----- ----- <u>국가유산청</u>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국가유산청장</u> ----- ----- -----.

국가유산보호기금 자산운용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개요	1. ---
1.1 자산운용지침의 개요	1.1 -----
2) 본 자산운용지침은 기금 관리주체인 <u>문화재청</u> 이 작성하고 국가유산보호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통 해 효력이 발생한다.	2) ----- ----- <u>국가유산청</u> -----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2. 자산운용관련 법령 및 규정	2. -----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자산운 용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기금 의 여유자금 운용)에 의해 문 <u>화재청장</u> 이 담당하고 있으며 기금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 정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 ----- ----- ----- ----- <u>국 가유산청장</u> 이 ----- ----- -----.
3. 자산운용의 목적 및 원칙	3. -----
3.2 자산운용의 원칙	3.2 -----
<u>문화재청장</u> 은 「국가유산보 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금의 여유자 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정성, 유동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 하여 자금의 운용정책 및 운 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정	<u>국가유산청장</u> 은 ----- ----- ----- ----- ----- ----- -----

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4. 자산운용 체계



4.1 자산운용조직 및 기능

1)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가) (생략)

나) 기금심의회는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으로 한다.

2) · 3)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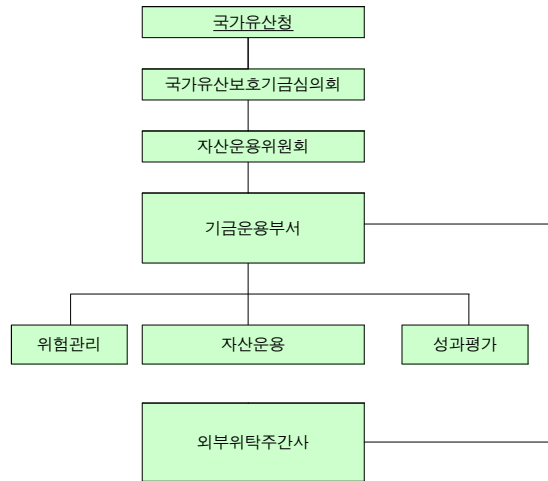
4) 기금운용부서

가)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주무부서인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에서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 ⑥ (생략)

-----.

4. -----



4.1 -----

1)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국가유산청 -----

-----.

2) · 3) (현행과 같음)

4) -----

가) -----

----- 국가유산

청 -----

-----.

① ~ ⑥ (현행과 같음)

나) (생략)

5) (생략)

8. 자산배분

8.2 자산배분의 원칙 및 방법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자산배분 비중은 연간 자산운용계획에 위임하고, 연간 자산운용계획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으로 확정한다.

2) ~ 4) (생략)

13. 감사 및 공시

1) (생략)

2) 기금의 운용내역 및 성과에 대해 기금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에 공시한다.

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8. -----

8.2 -----

----- 국가유산청장의 -----
-----.

2) ~ 4) (현행과 같음)

13. -----

1) (현행과 같음)

2) -----

----- 국
가유산청 -----
-----.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설계승인“이란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도서(발주청이 검토하는 “내역서“는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지침 및 관계 법령 등 제 규정에 따라 품질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이 그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5. “기술지도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기타 국가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기술지도가 요구되어 <u>문화재청장</u> 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6. (생략)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설계승인“이란 발주청이 작성한 설계도서(발주청이 검토하는 “내역서“는 제외한다)가 당해 사업지침 및 관계 법령 등 제 규정에 따라 품질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장이 그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현행과 같음) 5. ----- ----- ----- ----- <u>국가유산청장</u> ----- -----. 6. (현행과 같음)
제3조(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① <u>문화재청장</u>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가 높거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기술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	제3조(기술지도사업의 선정 등) ① <u>국가유산청장</u> ----- ----- ----- ----- -----

업을 기술지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분류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기술지도단의 구성) ① 문화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별로 기술지도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기술지도단은 설계승인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그 명단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요청하거나 문화재청장이 그 중요도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 단계에서 기술지도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청장-----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술지도단의 구성) ① 국가유산청장-----

-----.

② -----

-----.

----- 국가유산청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지도단은 당해 사업에 부합하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문화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⑤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단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술지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에서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 과정에서 기술지도를 요청한 경우 또한 이와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지도 실시예정일부터 7일 이전에 기술지도 내용 및 개최 일시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당해 기술지도에 참여·관여할 수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산청 -----

⑤ 국가유산청장-----

-----.

제5조(기술지도의 실시) ① -----

----- 국가유산청장과 -----
----- 국
가유산청장에게 -----

-----.

② -----

----- 국가유산청장에게 --
----- 국가유산청장은 --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기술지도 의견과 조치계획이 첨부된 기술지도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기술지도 결과를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6조(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제4항에 따라 기술지도사항을 이행하고, 문화재청장은 설계변경 등에서 기술지도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사항의 이행여부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술지도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기술지도사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또는 지연되는 경우, 그 사유를 요청

---.

③ -----

-- 국가유산청장-----
---.

④ 국가유산청장-----

-----.

제6조(기술지도의 이행 및 확인)

① -----

----- 국가유산청장-----

-----.

② 국가유산청장-----

-----.

③ 국가유산청장-----

제8조(해측) 국가유산청장-----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

[illegible]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유산 수리 필요성 검토) ① 국가유산수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를 거쳐 <u>문화재청장</u>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u>문화재청장</u> 은 제1항의 사업예산을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검토에 반영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6조(국가유산 수리 필요성 검토) ① ----- ----- ----- ----- ----- ----- <u>국가유산청장</u> ----- ----- -----. 1. ~ 5. (현행과 같음) ② <u>국가유산청장</u>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실측설계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u>문화재청장</u> (또는 시·도지사)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u>문화재청장</u> 은 설계도서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조사, 설계 검토, 위원회 심의 등 불가	제16조(설계승인) ① ----- ----- ----- <u>국가유산청장</u>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유산청장</u> ----- ----- -----. -----

피한 경우 사유를 통지하고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국가유산수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할 경우 발주자에게 설계도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⑥ 문화재청장은 제출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이행계획서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보완 이행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 조건이 있을 경우, 발주자는 설계도서를 보완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보완 완료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전문가 자문)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유산을 원형대로 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 3. (생략)

-----.

④ 국가유산청장-----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가유산청장-----

-----.

⑦ 국가유산청장의 -----

----- 국가유산청장에게
-----.

제18조(관계전문가 자문) 국가유산청장 -----

-----.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해체부재의 처리) ① ~

⑤ (생략)

⑥ 국가지정유산의 수리 과정에서 분리보존 결정된 부재를 보존하고 있는 소유자 및 관리단체는 부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2월 20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서의 제출) ① 국가유산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 보고서의 전자문서화한 파일과 수리 정보 등을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발주자(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② 작성된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는 제1항과 함께 문화재청,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국립문화재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

제22조(해체부재의 처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국가유산청장-----
-----.

제31조(보고서의 제출) ① -----

----- 국가유산청-----
-----.

② -----
----- 국가유산청-----

-----.

제33조(재검토기한) 국가유산청장

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 ----- ---
---	--

**국가유산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제3조 규정에 따라 <u>문화재청장</u> 이 임명한 설계심사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 <u>국가유산청장</u> ----- ----- --.
제4조(설계심사관의 임면) ① <u>문화재청장</u> 은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법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설계심사관으로 임명한다.	제4조(설계심사관의 임면) ① <u>국가유산청장</u> 은 국가유산청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설계심사관) 설계심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u>문화재청</u>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설계심사관) ----- ----- ----- <u>국가유산청</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7조(예비 설계심사관) 예비 설계심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u>문화재청</u>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예비 설계심사관) ----- ----- ----- <u>국가유산청</u>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9조(설계심사관의 교육훈련) <u>문화재청장</u> 은 설계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0시간 이상의 설	제9조(설계심사관의 교육훈련) <u>국가유산청장</u> ----- ----- -----

계심사관 직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제10조(설계심사관의 기록관리) <u>문화재청장</u> 은 설계심사관에 대한 관리기록부를 서식 1과 같이 작성하여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심사관의 기록관리) <u>국가유산청장</u> ----- ----- ----- --.
제11조(재검토기한) <u>문화재청장</u> 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2월 2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6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u>국가유산청장</u> ----- ----- ----- ----- ----- -----.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생략)	제14조(원가계산자료의 비치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수리의 원가계산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제정한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에 따라 제5조의 비목별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동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에서 제정한 타분야(건축, 토목, 조경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품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셈적용대상공사가 아닌 경우와 해당 품셈적용을 할 수 없는 비목계상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 --- <u>국가유산청장</u> ----- ----- ----- ----- ----- ----- ----- ----- ----- -----. ----- ----- ----- ----- --.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u>문화재청장</u> 이 고시하는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 <u>국가유산청장</u> ----- -----.
제6조(원가계산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은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 기준」(<u>문화재청</u> 예규)을 따른다.	제6조(원가계산 기준) ----- ----- ----- ----- ----- <u>국가유산청</u> ----- --.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별표 10]의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라 <u>문화재청장</u> 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생략) ② ~ ⑤ (생략)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 <u>국가유산청장</u> ----- ----- ----- -----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기타사항) ① (생략)	제29조(기타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유산 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문화재청장</u> 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 ----- ----- ----- <u>국가유산청장</u> ----- -----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영 제3조의13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 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u>문화</u> <u>재청</u>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다. 단, 별도의 행정조치(관보고 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후에 공개한다. ② ~ ⑥ (생 략)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 ----- ----- <u>국가</u> <u>유산청</u>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옴부즈만 운영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은 현상변경, 매장유산, 국가유산수리, 무형유산, 관람 서비스 등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u>문화재청장</u> 이 위촉한다.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국가유산청장</u> -----.

국가지정 문화유산(동산) 수리기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소장처”란 당해 문화유산이 <u>문화재청</u> 에 신고되어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 4. ~ 7. (생략)	제2조(정의) ----- -----. 1.·2. (현행과 같음) 3. ----- <u>국가유산청</u> ----- -----. 4. ~ 7. (현행과 같음)

단청 기록화에 관한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 (추진체계) ① 단청 기록화는 <u>문화재청</u> (유형문화재과)의 사업대상 목록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기록화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 (추진체계) ① ----- -- <u>국가유산청</u>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자문위원회는 사업시행 발주처에서 운영하되, <u>문화재청</u> (유형문화재과)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④ ----- ----- <u>국가유산청</u> ----- ----- --.
⑤ <u>문화재청장</u>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청 기록화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보고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u>국가유산청장</u> ----- ----- ----- ----- ----- -----.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재검토 기한) <u>문화재청장</u> 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u>국가유산청장</u> ----- ----- ----- ----- ----- ----- -----.

문화유산 국가등록에 관한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 ① 동 지침은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등록 신청한 문화유산과 <u>문화재청</u> 에서 실시한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 ----- ----- ----- <u>국가유산청</u>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절차)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 대상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은 전문가는 동 지침의 등록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 결과를 <u>문화재청장</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절차) ----- ----- ----- ----- ----- ----- <u>국가유산청장</u> ----- -----.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 ② (생략) ③ 분과위원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국가지정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심의시 <u>문화재청</u> 훈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별표2]의 기준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국가유산청</u> ----- ----- ----- -----.
제3조(회의자료 공개) 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개회 2일 전까지 문화유산위원회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u>문화재청</u>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3조(회의자료 공개) ① ----- ----- ----- ----- <u>국가유산청</u> ----- ----- -----.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 종료 후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에 등재함과 동시에 <u>문화재청</u>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단, 별도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① ----- ----- ----- ----- ----- ----- <u>국가유산청</u> ----- -----.

의 행정조치(관보고시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 이 후에 공개한다. ② ~ ⑤ (생 략)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재검토 기한) <u>문화재청장</u> (처분권자)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u>국가유산청장</u> ----- ----- ----- ----- ----- ----- -----.

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u>문화재청</u>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제안사항이란 내용이 <u>문화재청</u>에서 관장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u>문화재청</u>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안제도와 시스템 운영업무는 혁신행정관담당관이 관장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생략) ② <u>문화재청</u>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	<u>국가유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u> 제1조(목적) ----- ----- ----- -- <u>국가유산청</u> ----- ----- -----. 제2조(용어정의) ----- --- <u>국가유산청</u>----- ----- ----- ----- -----. 1.·2. (현행과 같음) 제3조(제안업무의 관장) <u>국가유산청</u> ----- ----- ----- -----. 제5조(제안의 접수)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가유산청</u> ----- -----

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④ (생략)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부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간사는 공무원제안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국무과장 및 문화재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 ⑦ (생략)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가유산청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u>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u>가. 문화재청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u> 나.·다. (생략) 2. ~ 7. (생략)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추진단)에 대하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u>국가유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u> 제2조(정의) ----- -----. 1. ----- ----- -----. <u>가.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기관</u> 나.·다. (현행과 같음) 2. ~ 7. (현행과 같음)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 ----- ----- ----- -----. ----- ----- ----- ----- ----- -----.

1. 문화재청(본청) : 법무감사담당관

2. · 3. (생략)

제9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문화재청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문화재청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1. 국가유산청-----
--

2. · 3. (현행과 같음)

제9조(가족 채용 제한) ① -----
---국가유산청-----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
-----국가유산청-----

-----.

1.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u>문화재청</u>(이하 “본청“이라 한다)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안책임) <u>문화재청장</u>(이하 “청장“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② (생략) 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u>문화재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u> 제52조 및 제54조의 규	<u>국가유산청 국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u> 제1조(목적) ----- ----- ----- ----- ----- ----- <u>국가유산청</u>----- ----- ----- -----. 제3조(보안책임) <u>국가유산청장</u>----- ----- ----- ----- -----. 제18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국가유산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u> -----

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 2. (생략) 3. <u>문화재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u> 4. (생략)	-----. 제27조(준용) ----- -----. 1. · 2. (현행과 같음) 3. <u>국가유산청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u> 4. (현행과 같음)
---	---

**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u>문화재청</u>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 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u>문화재청장</u> 및 그 소속기관장(이하 “<u>문화재청장</u> 등”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 3. (생략)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u>문화재청장</u>은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한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및 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u>문화재청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u>국가유산청 법률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u> 제1조(목적) ----- <u>국가유산청</u> ----- ----- ----- ----- -----.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 ----- --- <u>국가유산청장</u> 및 ----- -----<u>국가유산청장</u> ----- -----.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u>국가유산청장</u>-----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u>국가유산청장</u>-----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문화재청장등과 관련된 쟁송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 5. (생략)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문화
재청장등은 변호사를 대리인(고
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
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에
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는 퇴직
후 1년간 소송대리변호사로 선
임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퇴
직 후 1년 이내의 자라도 소송
대리변호사가 될 수 있다.

제6조(이해충돌 방지) ① 고문변
호사와 소송대리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등”이라 한다)는 부
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
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청장등-----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국가
유산청장등-----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유산청 -----

-----.

-----.

제6조(이해충돌 방지) ① -----

-----.

1. (생 략)
 2. 문화재청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생 략)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문화재청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 ② 고문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문화재청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문화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자문·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문화재청과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
 4. (생 략)
- ③ 문화재청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산청-----
 3. (현행과 같음)
 4. ----- 국가유산청-----
- ② -----

-----.
1. 국가유산청-----
 2. 국가유산청-----
 3. 국가유산청-----
 4. (현행과 같음)
- ③ 국가유산청장등-----

서 배제하거나 해촉·해임 하여야 한다.	----- -----.
제8조(사례비 등의 특례) 사안이 중요하여 국가의 이해에 미치는 정도가 높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변호사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문화재청장</u> 의 결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례비 등의 특례) ----- ----- ----- ----- ----- ----- ----- <u>국가</u> <u>유산청장</u> ----- -----.

(문화재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문화재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u>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진화기관”이라 함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다음 각목의 산불진화유관기관을 말한다. 가. ~ 마. (생략) <u>바. 문화재청</u> 2. ~ 12. (생략)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u>문화재청</u> 가.·나. (생략)	<u>(국가유산청)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u>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 -----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u>바. 국가유산청</u> 2. ~ 12. (현행과 같음)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국가유산청</u> 가.·나. (현행과 같음)

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문화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u>	<u>국가유산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u>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u>문화재청</u> 예산집행심의회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② (생략) ③ 고위공무원을 기관장으로 하는 <u>문화재청의</u> 소속기관의 장은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 시 <u>문화재청장</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 --- <u>국가유산청</u> ----- ----- -----. 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국가유산청의</u> ----- ----- ----- -- <u>국가유산청장</u>----- ---.

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문화재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u> 제1조(목적) 이 지침은 <u>문화재청</u>의 청렴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마일리지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② “부서(기관)”이란 <u>문화재청</u> 및 <u>문화재청</u>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부서를 말한다. 제6조(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① <u>문화재청</u> 직원 및 부서는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실적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u>문화재청</u> 직원 및 부서는 청렴활동 실적을 법무감	<u>국가유산청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u> 제1조(목적) ----- <u>국가유산청</u>-----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② ----- <u>국가유산청</u> 및 <u>국가유산청</u> ----- 제6조(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외 실적 반영) ① <u>국가유산청</u>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청렴활동 실적 제출 및 이의신청) ① <u>국가유산청</u> -----

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은 그 실적이 청
렴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청렴마
일리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 직원 및 부서는 청
렴마일리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
을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감
사담당관은 청렴마일리지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심
사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해당 마일리지를 반영하
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 -----

-----.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설치) 국가유산의 정책에 관한 <u>문화재청장의</u>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u>문화재청장 소속</u> 으로 「미래를 위한 국가유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 --- <u>국가유산청장의</u> ----- ----- <u>국가유산청장</u> <u>소속</u> ----- ----- -----.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국가유산의 보호·관리 및 활용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u>문화재청장의</u> 자문에 응한다. 1. ~ 8. (생략) 9. 그 밖에 국가유산에 관하여 <u>문화재청장이</u>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기능) ----- ----- ----- <u>국가유산청장</u> -----. 1. ~ 8. (현행과 같음) 9. ----- <u>국가유산청장</u> ----- ----- ----- -----
제4조(구성 등) ① (생략) ②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u>문화재청장이</u> 위촉하되, <u>문화재청 차장과 국장</u> 중 1명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u>문화재청장이</u>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u>문화재청 차장과</u>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	제4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국가유산청장이</u> 위촉하되, <u>국가유산청</u> ----- -----. ③ ----- ----- <u>국가유산청장</u> <u>이</u> 위촉하고----- <u>국가유산청</u> <u>차장</u> -----

원 중 1명을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④ (생략)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사 1명과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서기 1명을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제6조(회의) ① ~ ③ (생략)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문화재청장 또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생략)

⑤ (생략)

제9조(위원회 지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문화재청은 위원회를 적극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둘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보고) 위원회는 주요 논의사항과 후속 추진상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

-----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국가유산청 소속 -----
----- 국가유산청장-----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국가유산청장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지원) -----

----- 국가유산청-----

-----.

제11조(추진상황의 보고) -----

----- 국가유산청장-----

여야 한다.

-----.

방호원근무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예규는 <u>문화재청</u>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국가유산청</u> ----- ----- -----.

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재검토기한) <u>문화재청장</u> 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u>국가유산청장</u> ----- ----- ----- ----- ----- -----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재검토 기한) <u>문화재청장</u> 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u>국가유산청장</u> ----- ----- ----- ----- ----- -----.

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
유산이 지역적 범위, 유산의 성
격, 등재추진 전략상의 사유 등
으로 인하여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신
청 유산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다.

제5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제4조의 규정
에 따라 잠정목록 대상에 신청
된 유산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5조의 규정
에 따른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
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
로 선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 등재기준을 충족하고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 국가유산청장-----
-----.

1. ~ 3. (현행과 같음)

② 국가유산청장-----

-----.

제5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잠정목록 대상 유산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

-----.

② 국가유산청장-----

있다고 판단하는 유산을 직권으로 잠정목록 대상 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잠정목록 대상 유산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 그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여부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 문화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유산의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8조(잠정목록 조정) 문화재청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10년에 1회 이상 잠정목록을 재검토하여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 4. (생략)

-----.

③ 국가유산청장-----

-----.

제7조(유네스코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 제출) 국가유산청장-----

-----.

제8조(잠정목록 조정) 국가유산청장-----

-----.

제9조(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

-----.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9조의1(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 선정) ① 예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예비평가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우선등재목록 유산에 대하여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지침에 제시된 예비평가 신청 서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심사 서류는 국문으로 작성한다.

② (생략)

③ 세계유산 예비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유산이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산을 공동으로 등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이 예비평가 신청기관의 의견을 들어 신청서를 작성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평가 신청기관은 신청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유산은 문화재청장이 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1(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
선정) ① -----

----- 국가
유산청장-----.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 국가유산청장 -----

④ _____

-- 국가유산청장-----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유산의 관리를 문화재청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관련기관이 협의하여 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예비평가 신청서류를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 31일까지 1개의 유산을 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응) 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의1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평가 대상 유산의 예비평가 신청서의 최종 영문본을 당해연도 9월 15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예비평가를 신청한 다음해 10월 1일까지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즉시 이를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해당유산의 최초 예비평가 보고서가 문화재청에 전달된 시

---- 국가유산청 이외-----

-- 국가유산청과 -----

---.

⑤ 국가유산청장-----

-----.

제9조의2(세계유산 예비평가 대응) ① 국가유산청장-----

-----.

② 국가유산청장-----

-----.

③ -----

----- 국가유산청-----

점부터 5년째 되는 해의 2월 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예비평가를 받아야 하며 우선등재목록의 지위를 유지한다.

④ (생략)

제10조(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 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의 2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예비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유산 중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의 등재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한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중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 ① 국가유산청장-----

-----.

② 국가유산청장-----

-----.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국가유산청장-----

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기 등재신청한 유산의 재추진) ① ~ ⑤ (생략)

⑥ 세계유산으로 신청한 유산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등재불가(Not to inscribe)인 경우 운영지침 제158항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유산위원회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위원회의 폐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유산의 잠정목록 신청서를 삭제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요청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13조(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① 제11조에 따라 최종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된 유산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국문 및 영문의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운영지침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따라 등재신청연도 전년 8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

-----.

제12조(기 등재신청한 유산의 재추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국가유산청장 -----

-----.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 제출) ① -----

----- 국가유산청장 -----

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 초안을 검토한 후 등재신청연도 전년 9월 30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이 사항을 해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세계유산등재신청서 최종본 제출) ① 문화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 최종 영문본을 작성하여 등재신청연도 2월 1일까지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동 신청서의 형식이나 내용을 수정

-----.

② 국가유산청장-----

③ -----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국제기구 현지 실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문화재청
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세계
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기
구의 관계자가 현지 조사를 위
해 방한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
책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지사
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시·
도지사는 관계자의 조사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련
된 추가자료의 제출) 문화재청
장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 세
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
기구(실사자 등 권한을 위임받
은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등재
신청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
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 자
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시
·도지사는 자료 작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등재 신청 철회) 문화재청
장은 등재신청서 제출 이후 세
계유산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문
기구가 심사에 대해 권고한 의

-----.

제15조(국제기구 현지 실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국가유산청
장-----

-----.

제16조(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련
된 추가자료의 제출) 국가유산
청장-----

-----.

제17조(등재 신청 철회) 국가유산
청장-----

견을 검토하고, 등재를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8조(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①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 5.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내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소재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④ 세계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

제18조(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① 국가유산청장-----

-----.

1. ~ 5. (현행과 같음)

② -----

-----.

----- 국가유산청장-----.

③ 국가유산청장-----

-----.

④ -----

----- 국가유산청장-----

청취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세계유산 관련 재정지원) <u>문화재청장</u>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정보와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20조(세계유산 관련 전문단체의 지원) <u>문화재청장</u>은 ICOMOS 한국위원회, IUCN한국위원회, UNESCO한국위원회 등 세계유산 관련 전문단체들이 수행하는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국내·외 홍보 및 보존·관리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다국간 연속유산 또는 월경유산 등재 추진) <u>문화재청장</u>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운영지침에 따른 다국간 연속유산 또는 월경유산의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서 제14조까지의 적용을 생략하거나 <u>문화재청장</u>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절차로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 제19조(세계유산 관련 재정지원) <u>국가유산청장</u>----- ----- -----.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세계유산 관련 전문단체의 지원) <u>국가유산청장</u>----- ----- ----- ----- ----- -----. 제21조(다국간 연속유산 또는 월경유산 등재 추진) <u>국가유산청장</u>----- ----- -----. ----- <u>국가유산청장</u>----- ----- -----.
---	--

유적관리기관 다례·제향절차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다례·제향의 순서) ① (생략)	제6조(다례·제향의 순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의 헌화·분향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②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통령 헌화 대행은 <u>문화재청장</u> 이 수행한다.	6. ----- <u>국가유산청장</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 선정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 <u>문화재청장</u> 은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 중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그 가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제3조(예비목록의 조사) ① <u>국가유산청장</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문화재청장</u> 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된 전승자, 집단, 공동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u>국가유산청장</u> ----- ----- ----- -----.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 <u>문화재청장</u> 은 제3조에 따른 조사결과, 인류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예비목록의 선정) ① <u>국가유산청장</u> ----- ----- ----- ----- ----- ----- -----.
② <u>문화재청장</u> 은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예비목록을 추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② <u>국가유산청장</u> ----- ----- -----.
제5조(국가목록의 공표 등) ① <u>문화재청장</u> 은 국가목록에 관한 정	제5조(국가목록의 공표 등) ① <u>국가유산청장</u> -----

보를 문화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목록에 관
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
록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
목록 중 인류무형유산 등재 필
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을
무형유산위원회 및 「문화유산
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
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록으로 선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종목의 전승자, 집단, 공동체 또
는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승주
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
-----.

② 국가유산청장-----

-----.

제6조(인류무형유산 등재신청 목
록 선정) ① 국가유산청장----

-----.

② 국가유산청장-----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4조제3항에 따라 <u>문화재청장</u> (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을 임용제청함에 있어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와 「총장 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국가유산청장</u> ----- ----- ----- ----- ----- ----- ----- ----- ----- -----.
제4조(구성) ① ~ ③ (생략)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명 이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중에서 2명 이상, 국가유산분야에서 2명 이상, <u>문화재청</u> 관계자 1명 등으로 청장이 선임하여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u>국가유산청</u> ----- ----- ----- -----.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담당부서) ① 이 규정과 관련된 사무는 한국전통문화대	제12조(담당부서) ① ----- -----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u>문화재</u> <u>청</u>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③ (생략)	----- <u>국가유산</u> <u>청</u> -----. ②·③ (현행과 같음)
---	--